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마트폰 데이터 이월·타인 제공 요금제 의무화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66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스마트폰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 요금제 의무화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희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9.

다.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스마트폰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 요금제 의무화

가. 주요내용

-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이하 “데이터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제공 범위 내에서 남은 데이터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데이터 서비스 계약에 포함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 ⑥ (생략) <u><신설></u>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이하 “데이터 서비스”라 한다)를 매월 일정한 규모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데이터 제공량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u>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⑧ -----<u>제7항까지에</u>----- ----- ----- ----- ----- <u>갱신,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데이터 서비스 이용계약 등에</u>-----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 및 이용조건이 포함된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누락된 자료를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요금 및 이용조건이 불공정한 경우 등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¹⁾하

1)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고 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설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설계·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대부분이 매월 정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하고 있는데, KT는 대부분의 LTE/5G 요금제에서 남은 데이터를 1개월간 자동 이월하는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다수 LTE/5G 요금제는 데이터 함께쓰기·나눠쓰기, 데이터 주고받기(친구·가족 대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려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이월·타인 제공 관련 요금체계 현황 >

이동통신사	주요 내용
KT	○ ‘5G 슬림(이월)’ 등 대부분의 LTE/5G 요금제는 남은 데이터를 1개월간 자동 이월 - ‘Y데이터박스’ 앱으로 데이터 현황 및 이월분 확인, 가족과 공유도 가능 - 5G 슬림(이월): 이번 달 기본 데이터 중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자동 이월(다음달까지만 사용 가능)
LGU+	○ ‘5G 스탠다드’ 등 다수 LTE/5G 요금제는 데이터 함께쓰기·나눠쓰기, 데이터 주고받기(친구·가족 대상) 등 제공 - 5G 스탠다드: 데이터를 친구나 가족에게 매달 2번 나눠줄 수 있고, 가족에게는 2회 추가로 줄 수 있음. 한 번에 최대 1GB 줄 수 있음

자료: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2.

○ 그런데 여전히 이동통신사업자 별로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이 가능한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 부담을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매월 일정한 규모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데이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된 데이터 제공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남은 데이터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경우 그 특

성을 고려하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용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게 이월된 데이터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이 줄어들고, 잔여 데이터의 이월이나 타인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소멸을 전제로 한 기존 요금 구조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제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권 제한 및 요금의 이용자 전가 우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라 할 것 인바,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서비스 제공 방식을 의무화할 경우 요금제 설계에 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다수의 데이터 서비스 요금체계가 미사용 데이터의 소멸을 전제로 설계된 상황에서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을 이용조건으로 의무화하여 계약하도록 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요금제가 일원화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미이월 요금제의 요금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총 데이터 제공량 대비 이용요금을 상승시킬 경우 오히려 이용자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KT는 데이터 이월 여부와 상관없이 ‘5G 슬림’ 요금제 월정액을 58,000원으로 책정해 두고, 데이터 이월이 불가능한 요금제의 경우에는 월 제공량(21GB)을 다 써도 최대 1Mbps 속도로 계속 이용 가능한 QoS²⁾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과 같은 요금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이용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KT 5G 슬림 요금제 비교>

구분	5G 슬림 - 21GB	5G 슬림(이월) - 21GB
월정액	○ 58,000원	○ 58,000원
데이터	○ 21GB+다 쓰면 최대 1Mbps	○ 21GB+데이터 이월 가능
음성	○ 집/이동전화 무제한 ○ (+영상/부가통화 300분)	○ 집/이동전화 무제한 ○ (+영상/부가통화 300분)
문자	○ 기본제공	○ 기본제공
Y덤 (만 34세 이하)	○ 기본데이터 2배 제공	○ 기본데이터 2배 제공

자료: KT 요금제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2.

2) QoS (Quality of Service)는 통신망에서 음성·데이터·영상 등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도록 전송 속도, 지연 시간, 지터, 패킷 손실률 등을 관리·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데이터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연한 데이터 사용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데이터 제공량은 통신사의 요금제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을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통신사의 영업 활동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동통신사 자율로 데이터 이월(이월형 요금제) 및 타인 제공(데이터 선물하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요금제 체계의 개편(통합요금제 도입,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과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도입)와 함께, 이월형 요금제 및 데이터 선물하기 서비스의 개선·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SK텔레콤**은 현재 통신사들은 정부와 함께 전국민 안심데이터, 통합요금제, 최적요금제 안내 등 이용자 보호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월 및 타인 제공 기능 포함 의무화 시 현행 요금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가 불가피하고 이는 통신요금 인상이나 이용자 후생 감소(QoS 속도 저하, 서비스 중단·악화 등)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데이터의 양도를 허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사실상 환금성 거래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적 거래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성 제한과 요금 인상 우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